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96호
2. 발 의 자 : 이희원 의원
3. 발의일자 : 2023. 8. 14.
4. 회부일자 : 2023. 8. 21.

II.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공건축 사업 및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요청 시기를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공공건축심의 이전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국고보조금 손실이 우려되는바, 상위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계획의 수행 등)제4항을 준용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수행의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설정하여 신속한 행정절차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시 국가정책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 사업계획서 첨부 및 제출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096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4항을 준용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수행의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2018년 국회는¹⁾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할 경우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을 개정하였습니다.²⁾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서비스법」에 기반한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행 관련 기준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28.의결, 조정식의원 등 10인)」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동 조례 제9조³⁾ 및 제11조⁴⁾는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 등을 시행할 때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자체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에, 공유재산심의 대상 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이하 ‘공공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심의 절차는 ‘공공건축심의’ 이후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정책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대상 사업이라도 설계공모 이전에 공공건축심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제출된 심의 절차에 따르면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이후 ‘공공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④ 생략

4)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표-1]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 변경 전후 비교)



○ 현행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2제4항⁶⁾에 따르면 설계공모 이전에 공공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절차를 조정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설계 단계 시작 전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⁷⁾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공공건축심의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정책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내부자료(2023.7.).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7) 교육부(2022.10.28.).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련 협조 요청.

○ 그러나 변경된 절차에 의해 사전절차를 살펴보면([표-1]참조), 교육청에서 수행되는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가 공공건축심의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공공건축심의 결과⁸⁾가 ‘조건부 채택’, ‘재심의’ 나올 경우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공공건축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심의 건수 중 ‘조건부채택’ 및 ‘재심’의 비율(2021년: 48.9%, 2022년: 58.8%, 2023년 81.5%)이 크게 증가되는 상황인 바, 안전 심의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이 변경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건축심의 결과 법정 기준 이하의 예산 변경이 있더라도⁹⁾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 및 예산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공공건축심의 결과 (2021년~2023년)

(단위: 건수, %)

심의종류	2021년	2022년	2023년
원안채택	21 (48.8%)	20 (39.2%)	5 (18.5%)
조건부채택	11 (25.6%)	27 (52.9%)	21 (77.8%)
재심의	10 (23.3%)	3 (5.9%)	1 (3.7%)
전체	42 (100.0%)	50 (100.0%)	26 (100.0%)

8) 공공건축심의 결과 종류

1. 원안채택: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의안의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의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의안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의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의안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에 따라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함.

- 한편, 현재 자체제정투자심사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¹⁰⁾에 의해 일반적으로 매년 4회 정기 투자심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동 규칙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수시심사’를 상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는 교육청 자체 ‘공유재산심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을 수립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횟수를 확대한다면 심의 순서의 변경 없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의 내용에 맞게 “국가정책 사업(개축 등)”을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교육청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행정관리담당관-1681.8.22.), 국가정책 사업에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므로 조항을 굳이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
----------	------------------	-------	------------------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302호, 2023.4.25., 일부개정)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